

[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]

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(이하 ‘공단’)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·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.

설치 근거 및 목적

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본 기관의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·관리합니다.

설치 현황

공단이 설치·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시설별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시설명	합계(개소)	설치목적		안내판 설치여부
		시설안전(개소)	주차관리(개소)	
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총계	213	133	80	-
청소년수련관	35	28	7	설치
검단청소년문화의집	24	24	-	설치
연희청소년문화의집	9	9	-	설치
국민체육센터	16	12	4	설치
검단복지회관	16	7	4	설치
공영주차장	36	-	36	설치
문화회관	35	24	11	설치
사계절별매장	4	3	1	설치
검단어린이도서관	15	14	1	설치
석남어린이도서관	6	5	1	설치
실곡어린이도서관	16	15	1	설치
서구노인문화센터	6	6	-	설치

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

공단은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영상정보 관리 책임자를 공단 개인정보책임관이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
	이름	직위	소속	연락처
개인영상정보 책임자	박장훈	경영사업본부장(임원)	경영진	032-580-1103

※ 영상정보의 접근권한자는 설치 사업장별 팀장이나 파트장급으로 1명씩 지정합니다.

영상정보 관리현황

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별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등의 상세정보는 「[영상정보 관리 상세현황.pdf](#)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영상정보 확인 장소 및 방법

개인영상정보는 각 사업장의 영상정보 보관 장소에서 비치된 영상기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

-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·과기(이하 “열람등”)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 단,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.
- 정보주체는 열람등 요구를 하는 경우 공단의 장에게 「[개인영상정보 청구서](#)」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·존재확인 청구를 해야 합니다.
- 공단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, 이때에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되어야 합니다.
-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 - 가.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- 나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 - 다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- 공단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·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.

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

공단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
-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
-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
-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·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(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,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)
-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·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(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·열람자·열람 일시 등 기록·관리 조치 등)
-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

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
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,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,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.

시행일자 : 2012년 3월 15일